

#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기준

제정 2011. 6. 29.

**제1조(목적)** 이 기준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)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(이하 “산업진흥원”이라 함) 부패행위 임직원(이하 “부패행위자”라 함)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자(이하 “신고의무 위반자”라 함)에 대한 징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기준은 산업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(용어정의)** 이 기준에서 “부패행위”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2. 산업진흥원의 예산사용,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산업진흥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3. 위 각 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**제4조(부패행위 신고)** ①부패행위의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부패행위를 파악한 경우에 한함(단순 과실로 부패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)
  2.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하는 경우
- ②부패행위의 신고는 수사기관,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한다. 다만,

부패행위 중 산업진흥원 「임직원 행동강령」 위반행위 사항(예산의 목적외 사용, 공용물의 사적사용,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)은 감사실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.

**제5조(확인 주체)** 감사실장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.

**제6조(확인 대상 및 내용)** ①감사실장은 부패행위자의 직속 상급자 및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를 확인한다.

②부패행위자의 차상급자, 타부서 직원 등은 필요성이 있을 때 확인한다.

**제7조(확인 시점 및 절차)** ①부패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시점은 자체적발 사건일 경우는 부패행위자 조사시부터 종료 전 까지 확인하며,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 사건일 경우는 부패행위자로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확인한다.

②부패행위자의 직속 상급자 등으로부터 그 부패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1에 기재한다.

③신고의무 위반자의 위반 여부 조사시는 명예훼손, 비밀누설 등 관련 규정 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사대상·조사시점 등에 유의한다.

**제8조(위반자에 대한 징계 수준)** ①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패행위의 경중,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·감독 관계, 신고의무 위반 등의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징계처분을 요구한다.

②징계 수준의 세부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.

**제9조(위반자에 대한 징계 절차)** ①원칙적으로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도 부패행위자와 동일하게 인사관리요령 제8절의 징계절차에 따른다.

②외부 적발 사건 등에서 적발된 부패행위자와 자체 확인된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를 같이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.

**부      칙(2011. 6. 29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기준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<별표 1>

##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

확인 대상	부서(직위)	성명	부패행위 인지 여부 (인지/부지)
1. 직속 상급자			
2. 소속 직원			
3. 기타 관련 직원 (차상급자, 타 부서 직원 등)			

감사 업무 담당자는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속 상급자 등 관련 직원의 인지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음.

<별표 2>

##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임직원에 대한 징계 기준

1. 직속 상급자의 신고의무 위반

⇒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책임 부과

2. 차상급자 ·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임직원의 신고의무 위반

⇒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책임 부과

구분	부패행위 임직원		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임직원	
	직속 상급자	차상급자 및 동료 직원 등		
징계 내용	중징계	파면	정직	감봉
		정직	감봉	견책
		감봉	견책	기타*
	경징계	견책	기타*	기타*

\* 기타 : 산업진흥원 인사 관련 규정상의 징계는 아니나 경고, 주의 등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

주)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상을 참작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 처분 가능